

# 주식매매계약서

본 주식매매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2005년 12월 [ / / ] 일자로 체결되었다.

매도인: 오순봉, 김선임

매수인: 주식회사 원익,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회사: 주식회사 아토

기존경영진대표 문상영

위의 당사자들은 2005년 12월 [ / / ] 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제 1 조 매매대상주식

- (1)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매도인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주당 액면가 금 500원) 합계 3,565,481주(지분율 15.04%, 이하 “매매대상주식”)를 회사에 대한 경영지배권과 함께 매수인에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각 매도인 및 각 매수인 별 매매대상주식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 (2) 매매대상주식에는 본 계약 체결일까지 매도인에게 부여된 무상주, 주식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이익배당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가 포함되며,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위와 같은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그 권리 역시 포함된다.

## 제 2 조 매매대금 및 그 지급

- (1) 매매대금은 합계 금 8,080,961,950원으로 한다. 각 매도인 및 각 매수인 별 매매대금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 (2)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
  - (a) 계약금: 금 2,500,000,000원 (매수인 중 주식회사 원익이 기 지급)
  - (b) 잔금: 제5조에 따른 모든 잔금지급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본 계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금 5,580,961,950원을 지급 (매수인 중 주식회사 원익이  
금 2,0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피에스가 금 3,580,961,950원)

- (3) 본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은 매도인이 지정한 첨부 예금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 제 3 조 매도인의 주권 등 교부 의무 등

- (1) 본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은 매매대상주식 중 1,250,000주에 대한 주권을 매수인에게 보관시킨다.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매도인이 매수인 중 주식회사 원익에 기 예치한 주권을 이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 (2)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매대상주식 중 나머지 주식에 대한 주권과 매매대상주식 전부에 대한 명의개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 제 4 조 금융기관 차입금

매도인, 회사 및 기존경영진(별지 2. 기재와 같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및 기타 채권자와의 계약 또는 거래 관계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제한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조건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 5 조

잔금 지급 조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잔금지급일 이전 혹은 그 당일에 아래의 모든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1)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인 및 회사가 잔금지급일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및 협약을 모든 중요한 면에서 위반 없이 이행하였을 것(매도인 전부가 매매대상주식 전부를 담보, 제한 기타 부담 해소 후 이전해야 할 의무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의 현행 조건 유지 등을 포함)
- (2) 본 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모든 중요한 면에서 정확하고 허위가 없을 것
- (3)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대하여 정부 인허가 기타 제3자의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결합신고 포함) 그 인허가 및 동의 등을 득하였을 것
-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제한 혹은 금지하는 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거나 그러한 법원 혹은 행정당국의 판결, 결정 혹은 명령이 없을 것

- (5) 회사 및 본건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 (6) 회사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가 매수인에게 교부될 것
- (7) 회사에 대한 경영지배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것(매수인이 지명한 사람들이 회사의 이사진의 과반수로 선임되고, 실질적인 경영지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을 의미)

## 제 6 조 진술 및 보증

- (1) 매도인, 회사 및 기존경영진은 매수인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별지 4. 기재와 같이, 각각 진술하고 보증한다. 단, 본 계약 체결 이전 실사 결과 발견되어 매매대금 조정 사유가 된 사항은 진술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기존경영진대표는 다른 기존경영진을 대표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 제 7 조 매도인 및 회사의 확약 사항

- (1) 매도인, 회사 및 기존경영진은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 한다.

- (a) 대여금 및 지급보증의 해소: 회사가 매도인에게 대여 및 지급 보증한 경우에 매도인은 동 대여금을 잔금지급일 전까지 상환하고, 지급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 (b) 경업금지: 매도인과 기존경영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의 기간동안 회사의 사업 또는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회사, 조합, 단체, 조직 및 개인사업체에 임직원, 대리인, 고문, 상담역 등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 (c) 유사상호, 상표 및 명칭의 사용금지: 매도인과 기존경영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직접적으로는 혹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소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회사의 상호, 상표,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 상표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 (d) 주식매입 등의 제한: 매도인과 기존경영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명의 또는 계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에 따른 신주인수권 등 주식연계증권 포함)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며,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 행위 등 매수인의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제3자의 그러한 행위에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기로 한다.

- (2) 매도인, 회사 및 기존경영진은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 한다.

- (a) 매수인에 대한 조력: 잔금 지급의 전후를 불문하고 (i) 매수인이 본건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약정 또는 문서를 체결하고, 자료 또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ii) 본건 거래에 따라 매수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는 데 필요하거나 이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 요청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iii) 기타 본건 거래와 관련한 정부인가, 등록, 신고 또는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 이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b) 현상유지: 잔금지급일까지 회사가 기존 관행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 기준에 따라 경영되도록 하며, 회사의 영업권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잔금지급일까지 매수인의 서면동의 없이 회사는 (i) 배당결의를 통한 이익배당 또는 주식배당을 하지 아니하며, (ii) 일체의 제3자를 위한 보증 기타 담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iii) 급여 및 임대료 등과 같은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현금성 자산을 잔금지급일까지 보존하여야 하며, (iv) 회사가 보유하는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 및 기술적 know-how 등을 임직원을 통하여 또는 기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v) 잔금지급일까지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는 개별 건당 금 50,000,000원 이상의 신규 채무부담(기존 채무의 roll-over는 제외), 담보제공, 부채의 조기상환 또는 유형자산 처분(중요 설비장치를 제외한 통상의 사무용품에 대한 처분은 제외)을 하지 아니한다.
- (c) 인력구조 변경 금지: 잔금지급일까지 매수인의 서면동의 없이 회사의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해임하는 등 회사의 인력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인력구조의 변화(직원의 자발적 퇴사)에 대하여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 (d) 자본구조 변경 금지: 잔금지급일까지 매수인의 서면동의 없이 회사는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회사 구조의 변경 및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증가, 무상증자, 신주의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교환사채의 발행 등 회사의 자본구조에 변동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e) 협의 의무: 상기 사항에 추가하여 계약 체결 후 회사 경영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매수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8 조      유상증자 등

- (1) 매수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회사와 기존경영진은 본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회사의 추가적인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3자 배정 또는 주주배정의 유상증자 또는 사채의 발행(이하 본조에서 “유상증자 등”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2) 회사와 기존경영진은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요구하는 충분한 지분이 배정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

## 제 9 조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제반 정부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적극 노력 한다. 매도인과 회사는 매수인이 그러한 승인 또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 제 10 조 핵심인력의 유지 등

- (1) 매수인은 기존경영진이 1년 동안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존경영진이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경영진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매수인에게 위임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수인과 기존경영진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 (2) 기존경영진과 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경영지배권 이전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지정하는 회사의 핵심인력이 회사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 11 조 계약의 해제

- (1)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이후에는 해제하지 못한다.
  - (a) 매도인, 회사 또는 기존경영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 이행지체 또는 달리 불이행하여(진술보증 위반 포함)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b) 매수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 이행지체 또는 달리 불이행하여(진술보증 위반 포함)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c)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인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잔금 지급 조건이 본 계약 체결 후 3월 이 경과하는 날까지 충족되지 못하여 본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d) 매도인과 매수인 간 상호 합의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해제된다.
- (2)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이행한 행위는 무효로 하고, 기 지급된 계약금(법정 이율을 적용한 발생이자 포함)이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 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문서의 작성 및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본 계약이 어느 당사자의 귀책사유도 없이 해제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본 계약이 일방 당사자(회사의 계약 위반은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본다)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매수인이 귀책사유있는 당사자의 경우 계약금과 발생이자를 매도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

## 제 12 조 면책

- (1)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i) 본 계약서, 본 계약서의 첨부, 부록,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교부한 증명서, 서류 또는 증서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기재한 진술 및 보증 사항에 관하여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내지 부정확인 있거나 (ii)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 이행지체 또는 달리 불이행함으로써(잔금 지급 이전에 회사의 의무 위반은 매도인의 의무 위반으로 본다)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 혹은 손실을 가한 경우 손해 혹은 손실가 없도록 상대방 당사자를 면책, 배상 혹은 보상하여야 한다(관련 비용, 변호사 기타 전문가 보수 변상 포함). 이 경우 면책금액은 매매대금을 한도로 하며, 손해 또는 손실액의 누적금액 기준 금 10,000,000원까지는 무시한다.
- (2) 본조에서 정한 면책의무는 잔금 지급일 이후 3년(단, 조세 및 노동 관련 사항의 경우 5년)의 기간동안 존속한다.

## 제 13 조 기밀유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여하한 형태의 정보 및 본 계약서의 존재와 그 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며, 그 주주,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어떠한 당사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정보, 본 계약의 존재 또는 그 조건을 공개하거나 정부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고 투자, 차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서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여하한 형태의 정보가 포함된 문서, 컴퓨터 파일 및 기타 기록매체 또는 유형물을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자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 14 조 계약 양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 15 조 기타

- (1) 완전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들간의 이해와 합의의 전부이며,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들 사이의 서면 및 구두로 이루어진 모든 합의 및 이해를 대

체한다. 또한, 매도인, 매수인 중 주식회사 원익, 회사 및 기존 경영진대표가 2005. 10. 7. 자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는 본 계약에 의하여 대치된다.

- (2) 통지: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가된 모든 통지 및 기타 의사전달은 당사자들의 주소로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 또는 배달증명우편이나 팩스로 송신하여 수신인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단, 매도인에 대한 통지는 매도인 대표인 오순봉에게 하며, 그 경우 오순봉에 대한 통지는 매도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매도인에 의한 통지는 매도인 대표인 오순봉이 하며 그 경우 오순봉에 의한 통지는 매도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3) 세금 및 비용: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기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당해 당사자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지급하여야 할 모든 관련 세금 및 비용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진다.
- (4) 개별성: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위법, 무효 또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정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다른 규정의 유효성 및 구속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5) 수정: 본 계약서의 변경이나 수정 및 본 계약의 조건에 대한 권리 포기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며 기속력이 없다.
- (6)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간의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 (7) 매도인의 연대책임: 매도인은 본 계약서에서 매도인의 의무로 정한 사항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하 여백]

상기 합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5부를 작성,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매도인

오 순 봉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청구빌라 501동 302호  
주민등록번호 : 610830-1095028

김 선 임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청구빌라 501동 302호  
주민등록번호 : 630227-2148213

매수인

주식회사 원익

대표이사 이 광 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타 23층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장 호 증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회사

주식회사 아토

대표이사 문 상 영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 시화공단 2다 302호

기존경영진대표

문 상 영

주소 :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167 삼성아파트 525동 1301호  
주민등록번호 : 570211-1047814

별지 1. 매도인 및 매수인 별 매매대상주식 수 및 매매대금

1. 매도인 별 매매대상주식 수 및 매매대금

구 분	주 주 명	주식 수	대 금 (원)
1	오 순 봉	2,976,858	6,746,881,060
2	김 선 임	588,623	1,334,080,890
계	2명	3,565,481	8,080,961,950

2. 매수인 별 매매대상주식 수 및 매매대금

구 분	매수인 명	주식 수	대 금 (원)
1	주식회사 원익	1,985,490	4,500,000,000
2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1,579,991	3,580,961,950
계	2명	3,565,481	8,080,961,950

별지 2. 기존경영진 명단 및 소유주식수

1. 문상영(대표)

주소 :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167 삼성아파트 525동 1301호  
주민등록번호 : 570211-1047814  
소유주식수 : 752,700주

2. 이준열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8 세원빌딩 5층  
주민등록번호 : 470908-1802421  
소유주식수 : 358,000주

3. 김호식

주소 :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진산마을 520-1704  
주민등록번호 : 630801-1067530  
소유주식수 : 181,550주

4. 윤상혁

주소 :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167 진산마을 삼성5차 아파트 524-103  
주민등록번호 : 621115-1055131

소유주식수 : 181,600주

5. 강형석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101-108  
주민등록번호 : 650603-1932718  
소유주식수 : 0주

### 별지 3.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매도인, 회사 및 기존경영진은 매도인, 매매대상주식 및 회사에 대한 다음 사항이 본 계약서의 체결일 현재 정확하고 진실함은 물론 잔금 지급일 당시에도 정확하고 진실할 것임을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증한다.

1. 일반능력 및 수권. 각 매도인은 법령에 따라 유효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매도인 중 오순봉은 매도인을 대표하며, 매매대상주식 중 다른 매도인의 소유부분에 대하여 주식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각 매도인을 위하여 수령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상하고 결정할 정당하고 적법한 권한을 수임 받았다.
2. 주식의 처분권한 및 그 제한. 매매대상주식에는 어떠한 담보 및 권리제한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도인은 매매대상주식에 대한 유효하고 완전한 형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잔금지급기일에는 어떠한 제한, 담보 기타 부담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매매대상주식이 이전될 것이다.
3. 법령 및 계약상의 제약. 매도인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은 (1)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배치되지 아니하며, (2) 매도인 및 회사가 당사자인 약정 등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설정~~ 시키거나, 해제 또는 해지의 ~~시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3) 매도인 및 회사의 자산 및 영업에 대한 어떠한 담보 및 권리제한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4. 정부인가 및 제3자의 동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외에 매도인 및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인가 또는 어떠한 제3자로부터의 동의나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5. 소송. 본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거래의 완성을 방해 또는 저연할 만한 것으로서 매도인,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을 당사자 또는 관련자로 하여 계속 또는 진행 중이거나 계속 또는 진행될 염려가 있는 소송, 심의, 수사, 조사 또는 기타 이에 유사한 사법 또는 행정절차는 없다.
6. 회사의 실재. 회사는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자산을 소유 및 임차하고 그 사업목적과 기타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유효한 권한과 자격 및 능력을 가지고 있다.
7. 자본 및 주주구성. 첨부 1은 회사의 주당 액면가, 수권주식총수, 발행주식의 종류와 그 총수, 자본금을 각 정확하고 진실하게 기재하고 있다. 회사의 모든 기발행 주식은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었다. 또한 첨부 1은 본 진술 및 보증이 이루어지는 현재 회사의

모든 주주 및 그 소유주식수, 등록 질권자 및 질권설정주식수를 정확하고 진실하게 기재하고 있다. 첨부 1에 명시된 외에, 회사는 (1)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증권 또는 권리를 발행 또는 부여한 바 없으며, (2) 주식의 발행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상법에 따라 신주 발행시 기존 주주로서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제외) 기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한 바 없다.

## 8. 재무상태.

8.1 재무제표. 첨부 2는 회사의 2004년도 보고서 및 2005년도 반기보고서상의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 등”)이다. 또한 (1) 위 재무제표 등은 그 작성기준일 현재에 유효한 관계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 및 회사가 적용했던 기존 회계 원칙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2) 회사의 장부 및 기타 기록에 근거하고 이에 일치하여 작성되었으며, (3) 그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 등의 재무상태 및 동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또는 해당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정확하고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8.2 부외부채. 회사는, 재무제표 등에 표시되거나 반영된 부채, 외에 어떠한 우발채무 기타 부외부채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 회사 및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 본 진술 및 보증일 이후에 통상적인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부채 외에 다른 우발채무 기타 부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정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8.3 2005년도 반기보고서상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경사항. 첨부 3에 기재된 외에, 회사는 2005년도 반기보고서상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통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왔으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단, 계약금 지급일 이후 본 계약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경영참여에 따른 사안은 제외): (1)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 또는 향후 영업전망에 중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회사자산의 파괴, 손상, 손실 또는 가치 감소(보험으로 이러한 손실 등을 전보 받을 수 있는지를 불문한다)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의무, 채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거나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종업원을 제외한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보증채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채무 또는 책임을 지급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판매, 양도, 임대 또는 달리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에 대하여 담보 및 권리제한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5) 합계 10,000,000원 이상의 자본적 지출을 시현하거나 연간 리스료 또는 차임이 5,000,000원 이상의 자산리스 또는 임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6) 회사의 주요계약을 개정, 변경 또는 해제, 해지하지 아니하였으며, 5,000,000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회사의 채권이

나 기타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7) 회사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가, 허가, 확인 및 신고, 보고, 통지, 통보 등의 접수 및 수리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취소 기타 무효화되지 아니하였다. (8) 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하거나 주식소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9) 회사 및 회사자산과 관련한 소송, 신청, 중재,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제기하거나 제3자가 제기한 바 없으며, 이러한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화의 또는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단, 계약체결일 이후의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임직원을 해고하거나 명예퇴직을 실시하거나 달리 통상적이지 아니한 임직원 감축사유가 없었으며,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예고된 사실이 없다. (11) 회사가 현재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양도, 이전하거나 라이센스를 준 사실이 없다. (12) 다른 회사의 사업 또는 영업을 취득하거나 라이센스계약 또는 합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13)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및 장부를 작성하는데 적용한 회계원칙 또는 추정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9. 조세. 회사는 그 설립이후 지금까지 정부기관에 신고가 요구되는 모든 납세 신고 및 소득신고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납부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조세를 납부하였다. 회사는 과세 또는 세금 납부의 기한연장을 위한 어떠한 계약 또는 정부기관에 의한 과세 및 징수를 위한 어떠한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도 아니다.

10. 법령의 준수. 회사는 공정거래법령, 환경 및 유해물처리 관련법령, 보건, 노동, 근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법령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 왔으며, 현재도 준수하고 있다. 회사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법령의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을 당하거나 조사, 신문 또는 사실조회를 받거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첨부 4는 회사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정부인가의 정확한 목록이며, 이에 기재된 정부인가 외에 회사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부인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명시된 정부인가는 현재 완전하게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는 위 정부인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달리 해지 및 취소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수령한 바 없다.

11. 주요계약. “주요계약”이라 함은 어느 당사자가 체결한 구두 또는 서면 기타 여하한 형 태의 계약으로서 당해 당사자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향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당해 당사자의 자산, 부채, 재무상태, 영업 및 기타 사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하되, 회사의 통상적인 여수신 활동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1)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수령할 금액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이 일회성의 계약인 경우에는 합계 10,000,000원, 이행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계속적 계약인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10,000,000원 이상인 계약, (2)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계약, 및 (3) 자회사,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모두 주요계약으로 본다. 첨부 5는 회사의 주요계약의 목록으로서 기타 주요한 계약내용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표시하고 있다. 본 계약서 첨부 5에 명시된 외에는, (1) 모든 주요계

약은 적법하게 성립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한 기속력을 가지며, 회사 등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위 계약상의 권리를 담보 및 권리제한에 구속됨이 없이 완전하고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고, (2) 회사는 지금까지 위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어떠한 면에서도 그 의무를 불이행한 바 없으며, (3) 회사 및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상대방 당사자는 위 계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불이행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4) 회사는 위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계약의 해제, 해지, 기간연장의 거부, 계약조건 변경의 요구, 계약상 의무이행의 거부 및 의무이행지체의 통지를 받거나 그와 같은 의사를 전달 받은 바 없다.

## 12. 자산.

12.1 유형자산. 첨부6은 회사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타 부동산 및 공부상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자동차, 중기 등의 동산(이하, 본조에서 “부동산 등” )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기재하고 있다. 회사는 부동산 등의 소유 또는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 임차권, 지역권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권한과 관련된 계약의 내역 및 현황에 대하여는 첨부6에 정확하고 진실하게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 등과 회사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장비, 시설, 구조물 및 기타 동산은 현재 사용에 적합하고 운용 또는 구동이 가능한 양호한 상태이고,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 되고 있다. 첨부6에 명시된 외에는 부동산 등과 기타 동산은 어떠한 담보 및 권리제한의 내용이 되지 아니한다.

12.2 지적재산. 회사는 그가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지적재산에 대하여 적절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첨부7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및 회사가 제3자에게 부여한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그 내역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기재하고 있다. 첨부7에 명시된 외에, (1) 회사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계류 중이거나 예고된 사실 또는 회사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으며, (2) 회사가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책임을 지거나 손해배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3) 회사 및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 이러한 침해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바 없다.

13. 보험. 첨부8은 회사가 가입한 모든 보험 및 그 주요조건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위 보험 외에 회사가 법령상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혹은 동종업계에서 다른 유사 회사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보험증권 및 약관, 기타 보험약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 14. 노사관계.

14.1 노동관련법령의 준수. 회사는 (1) 그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임금, 상여금, 제 수당 또는 기타 보수를 지급하였고, (2) 법령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기타 법

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노동관련 보험에 가입하였고, (4) 국민연금 등 법령에 의하여 회사 등이 지원할 것이 요구되는 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5) 기타 노동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있다.

14.2 노사관계 계약. 첨부 9는 회사가 그 임직원 또는 직원대표와 체결하여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근로계약, 노동관련계약, 단체협약, 임금협약 및 근로규칙의 내역 및 그 주요조건을 기재하고 있다. 첨부 9에 명시된 외에, 서면 또는 구두의,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의 회사 등의 고용 또는 노동 관행은 모든 면에서 관련 법령 및 위 고용계약, 노동관련계약, 단체협약 및 근로규칙과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

14.3 산업재해. 첨부 10은 (1) 회사의 고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전직 또는 현직 직원의 과거 3년간 이미 종결되었거나 현재 계류 중이거나 장차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해,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일체 및 (2)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서 회사의 직원이 상해를 입은 사고를 전부 기재하고 있다.

14.4 노조활동.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의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직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나 단체에 의해 파업, 작업중지 또는 기타 집단적 노동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14.5 노사관계 소송. 첨부 11에 명시된 외에, 회사의 임직원들에 연관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회사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고된 고용관련 소송, 고발, 부당노동행위혐의, 진정, 노동쟁의, 파업, 작업중지 또는 정부의 행정적 조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5. 소송 및 분쟁. 첨부 12는 회사 또는 그 임직원(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상대로 계속 또는 진행중인 모든 소송, 신청, 중재, 수사, 조사, 심의 등의 사법 또는 행정절차의 내역 및 그 진행상황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기재하고 있다.

별지 4. 매수인의 진술 및 보증

매수인은 다음 사항이 본 계약서의 체결일 현재 정확하고 진실하며, 잔금 지급일 당시에도 정확하고 진실할 것임을 매도인에게 진술 및 보증한다.

1. 일반능력. 각 매수인은 법령에 따라 유효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계약권한. 매수인은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본 계약서 및 기타 관련된 서류를 작성 및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 및 완성할 수 있는 유효하고 완전한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다. 매수인은 본 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위하여 또한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내부 승인 및 수권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였다.
3. 자금능력.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다.

[첨부 리스트]

첨부 1. 자본 및 주주구성

첨부 2. 2005년도 반기보고서상의 재무제표 및 동년도 [8]월말 현재 가결산 재무제표

첨부 3. [8]월말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주요 변경사항

첨부 4. 사업상 취득한 정부인허가등록 등 목록

첨부 5. 주요계약 목록

첨부 6. 유형자산 현황

첨부 7. 지적재산권 현황

첨부 8. 보험 현황

첨부 9. 노사관계 계약 현황

첨부 10. 산업재해 현황

첨부 11. 노사관계 소송 현황

첨부 12. 소송 및 분쟁 현황